

토지세분)를 그대로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면서 2000년에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·마권세분교육세의 시한을 2005년까지 연장하고,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담배소비세분은 현행 40%에서 50%로 인상하고, 경주·마권세분은 현행 50% → 60%로 세율을 인상하였다.

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(경주·마권세 제외)의 50%범위내⁸⁾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 교육재정의 조기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3) 개정조문 및 해설

○지방교육세의 세목구분 - 법제5조·제6조

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특별·광역시세, 도세가 된다.

○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- 법제260조의2

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세 당시의 교육세 납세의무자와 같으며,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(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 제외), 경주·마권세, 주민세균등할, 재산세, 비영업용 승용자동차(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)에 대한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.

○지방교육세의 세율 - 법제260조의3

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아래 <표 2>와 같으며,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주·마권세분 지방교육세율 제외⁹⁾하고, 표준세율의 50%의 범위안에

8) 현행 교육세에서는 교육세법시행령에서 30%의 탄력세율을 두고 있으나,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50%범위내에서 조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,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

9) 경주·마권세분 교육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로 환급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경마장 운영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감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.